

우석대학교 다학기제운영규정 제정 사유서

1. 제정 규정 명칭

제정	○ 다학기제운영규정
----	------------

2. 개정사유

- 학생의 교육 수요 및 대외 교육 환경의 급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학기제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

3. 붙임

제정	○ 다학기제운영규정
----	------------

다학기제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학칙 제11조3항 다학기제(이하“다학기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"다학기"라 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오리엔테이션, 실습, 집중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학기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.

제3조(운영) ①학기운영은 다음과 같다.

1. 1년 2학기제: 1학기·2학기
2. 1년 3학기제: 1학기·2학기·3학기
3. 1년 4학기제: 1학기·2학기·3학기·4학기
4. 1년 5학기제: 1학기·2학기·3학기·4학기·5학기

②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 다만, 학칙 제36조의 이수 시간을 준수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.

제4조(수강신청) ①다학기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②다학기 운영학과의 한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37조 이수학점에 준하며, 학년당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등록금) 다학기 운영학과의 등록금 납부기간이나 등록금액 산정은 1년 2학기제 학과와 동일하며, 3~5학기제 등록금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강사료) 다학기 운영학과의 강사료는 1년 2학기제 학과와 동일하며 다만, 3~5학기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